







(주)인더스비전

소형 방폭카메라 시스템 설치 구성



설치 자재 구성표

순번	형태	규격	인증사양	구성수량
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VEX-PL/PLs Series_방폭카메라 • iVEX-PL-WB02_벽부형브라켓 • 방폭케이블 글랜드 탑재 • 방폭 Armored Cable 3미터 탑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x db IIC Gb • Ex tb IIIC Db • IECEx, ATEX, KCs JPEX, NEPSI 인증 	1set
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델명 : 방폭정선박스 • 규격 : 22mm, 3/4" PF • Plug : 2개 탑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xd IIC T6, IP66 • KCs인증 	1set
3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델명 : 방폭케이블 글랜드 • 규격 : 16mm, 1/2" NPT • 16 to 22mm adaptor 탑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x db IIC Gb, • Ex tb IIIC Db • IECEx, ATEX, KCs인증 	2set
4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델명 : iVEX-EMC-A300 • 방폭 Armored Cable • 모델명 : iVEX-EMC-A300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레탄외피/PE내피 • 2중 편조 (Braid Shield) • Stainless Steel Wire • Cat.5e 	3미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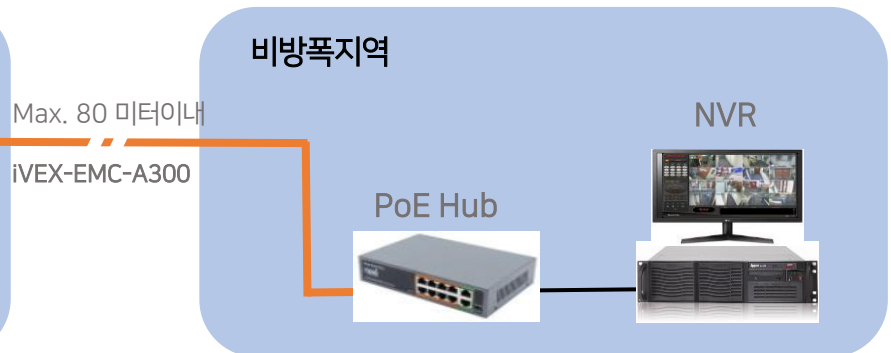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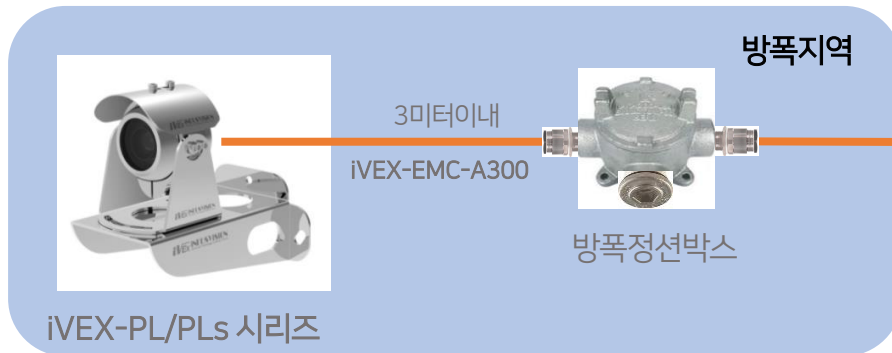
설치 구성도



정면 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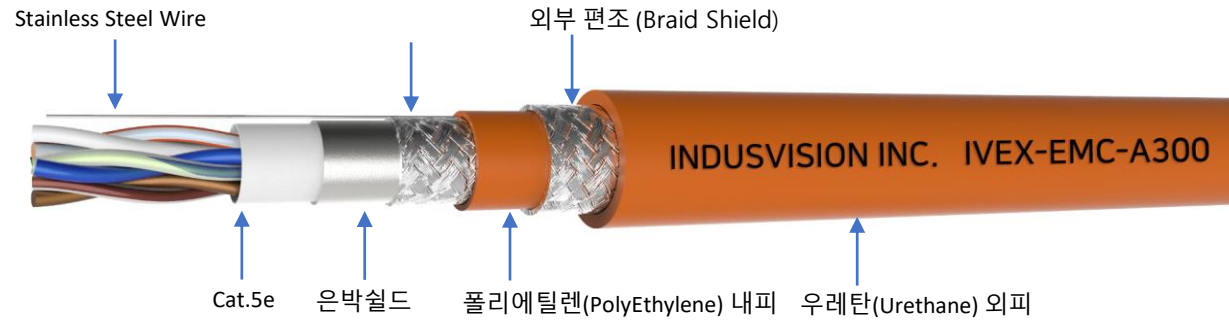


측면 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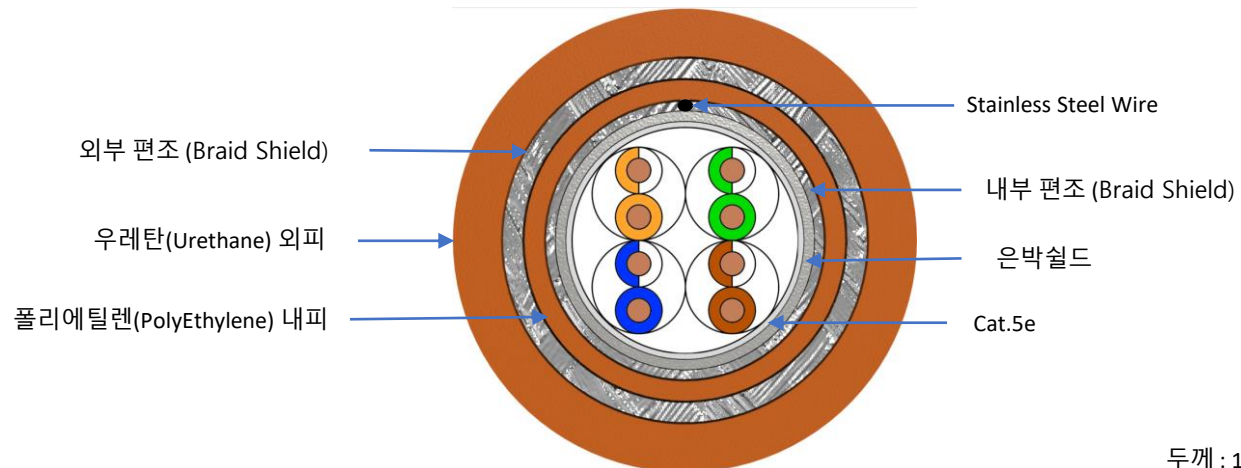


방폭 Armored Cable 상세구조

측면 구조



평면 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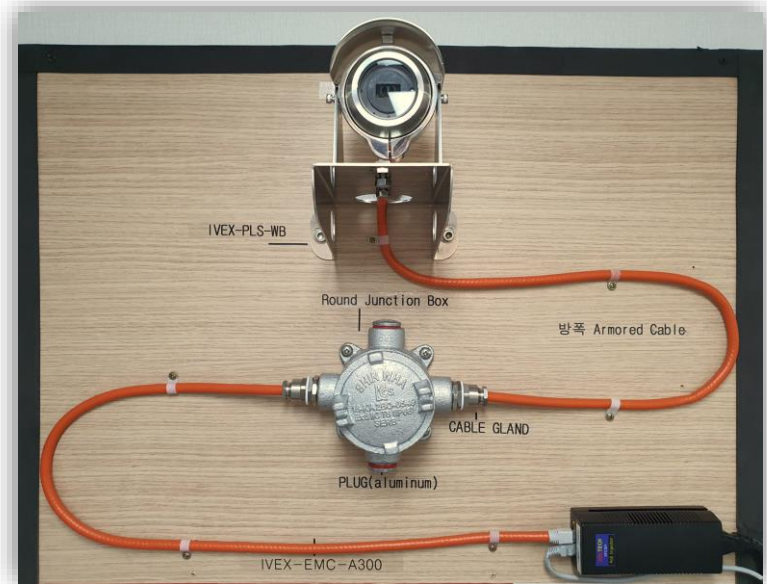
두께 : 10mm

설치 구성 비교

기존 설비 방식



신규 설비 방식



실링피팅/ 후렉시블 배관/니플등 이용

방폭Armored 케이블 이용

소형 방폭카메라 시스템 구성의 장점

- 방폭CCTV 구성 제품 단가가 저렴하다
- 설치비 및 인건비가 기존 방폭설비 대비 파격적으로 절감된다.
- 설비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여 이해가 쉽다.
- 배관/배선/방폭전문 기자재가 필요없다.
-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다
- 시스템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.
- 관리자가 폭발위험환경에 노출이 줄어 안전사고관리에 유리하다.
- 산업안전 및 PSM 심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.

방폭카메라 사용 분야



반도체/디스플레이/IT제품 제조



2차전지/전기차 배터리 제조



자동차 도장 공정



오일&가스



석유화학



정유공장



대형선박/보트/요트



육 해상 플랜트



원자력 발전소/제철소



석탄화력 발전소



육군탄약고/공군유류창고/해군구축함



제약/식품 제조환경



농림축산/하수종말처리/환경시설



도로교통/터널



각종유해화학환경

방폭기기 사용 관련 법률 및 규정



산업안전 보건법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유해, 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(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)
- 산업안전보건법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, 기구의 선정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(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장 안전인증

-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-54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
- 노동부고시 제1993-19호 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배선 등 에 관한 법률
- 노동부고시 제2010-12호 위험기계,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
- 노동부고시 제2016-12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에 관한 고시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긍정안전자료, 공정 위험성 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**공정안전보고서(PSM)**를 작성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1995년 PSM제도 최초 도입, 현재 안전보건공단 (KOSHA)에서 관리 감독

- 안전인증 위반 시에는 위 법령과 고시를 근거하여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관련 법령 및 시행령, 시행규칙 > 고용노동부 사이트(<http://www.moel.go.kr>)

환경법

- 화학물질관리법 2015년 개정시행 환경부
- 화학물질관리법 (화관법)
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(화평법)
 - > 장외영향평가제도 (화학물질 안전원 <http://nics.me.go.kr/main.do>)
 - > 반도체 / 디스플레이 / 2차 전지 시장 적용근거

- 폐기물관리법 2017년 개정시행 환경부

기타 관계법령

전기사업법 / 전기공사사업법 /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/ 도시가스사업법 / 위험물안전관리법 /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/ 광산안전법 / 전력기술관리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

Thank you

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, 203동 704호

Tel : 032-724-9077 / Fax : 032-724-9078

E-mail : info@indusvision.com

www.indusvision.com